

「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민성 의원 외 24명

2. 제안이유

- ‘23. 5. 31. 제정된 「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여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함

3. 주요내용

-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(안 제4조)

기존 지정 기준	완화된 지정 기준
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<u>30개 이상 밀집</u>	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<u>상업지역의 경우 25개 이상 밀집,</u> <u>상업지역 외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.</u> 다만,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 주용도지역이 50%이상인 용도지역으로 적용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의2
- 부서검토: 일자리경제과 의견제출(붙임)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
 -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소상공인 운영점포 30개 이상 밀집에서 상업지역은 25개 이상,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으로 완화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- 검토 결과,
 - 밀집 점포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확대하고 상인조직 구성 촉진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